

육아정책 소식

5세 누리과정 연수 시작

-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연수 실시로 5세 누리과정 질 관리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011년 12월 21일(수),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를 담당할 강사요원 중앙연수를 시작으로 전국 32,000여명의 만 5세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중앙연수는 시·도별 연수담당 강사요원 148명과 시·도교육청 및 시·도 업무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집합 연수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 1월 2일부터는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 집합연수(15시간, 전체 83회)가 진행된다. 집합연수는 5세 누리과정

연수 형태 및 시간	연수 시기	연수 내용
중앙연수	'11.12.21~12.22 (1박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강사요원(148명) 및 시·도 교육청, 시·도 담당자(34명) 대상 연수 ※ 연수 프로그램 및 PPT, 동영상 등 강의자료를 제공하여 연수의 질 확보
집합연수 (15시간)	'12.1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세 누리과정 총론 및 5개 영역별 각론 이해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 등
원격연수 (30시간)	'12.2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교육(15시간): 집합연수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 기타 교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도 공유 가능한 내용으로만 5세 담당교사의 재교육 가능 • 심화교육(15시간): 5세 누리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내용별 활동 구성 과정(계획-실행-평가과정) 이해
기타 교원연수	'12.3월~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5세 누리과정에 대한 기타 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원 직무 연수시 포함하여 실시 • 원격교육: 5세 담당교사들을 위해 제공된 원격 심화연수 내용을 기타 교원들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운영

의 내용 및 운영방법, 다양한 적용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5세 담당교사가 담임업무 수행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의 유치원 교사 15,000여명과 어린이집 교사 17,000여명이 함께 참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시·도 교육청), 보건복지부(시·도청)가 육아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집합연수에 이어 만5세 담당교사를 위한 원격연수(30시간, '12.2월)가 실시될 예정이다. 원격연수를 통해 5세 누리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내용별 활동구성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담당 교사들의 5세 누리과정 적용을 돕는다.

입법 예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세 누리과정, 3~4세로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5세 누리과정에 이어 만 4세, 만 3세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같이 적용되는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스케줄을 연구하여 발표”할 것을 교과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12년 3월까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교육과정 통일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0~2세 무상보육 실시

- 보건복지부 2012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1년 12월 31일 국회 본 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보육 분야 예산은 '11년도 25,600억원에서 '12년도 30,999억원으로 21.1% 증가되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도에 주요 변화는 우선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기존 소득하위 70%까지 적용에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확대되었으며,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신설되어 192천명을 대상으로 462억원이 투입되어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강화를 통해 보육수요가 높은 일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어업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가 농림부 특별회계로부터 이관되어 신규로 지원될 예정이며, 공공형어린이집, 산모 신생아도우미, 보육돌봄서비스 및 어린이집 지원 투입 예산이 확대되었다.

영유아보육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 시행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시행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사업주 뿐 아니라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도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 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산업단지 내 설치 어린이집은 보육실을 1층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보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강화

어린이집 건물·토지에 사용되는 소유권 등의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부채 상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장은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변경인가 전에 부채여부 및 상환계획을 미리 점검할 수 있어 어린이집의 무분별한 매매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14.3.1일부터 시행)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이 강화되어 80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필요 경력 기간이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보육교사도 보육교사 3급에서 2급 승급에 필요한 업무경력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현행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조정된다.